

인천광역시의회규칙(공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☐ 개정사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안전심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절차를 정함.(제72조의2 신설)

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2012.04.30)에서
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휴 수 용

2012년 5월 7일

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14 호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회 의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절차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예산안”은 “기금운용계획안”으로, “결산”은 “기금결산”으로 본다.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